

【 2016.1.21(목) 강원일보 】

알립니다 시·군 건강달리기대회 및 3·1절 단축마라톤

가슴이 뛴다, 봄 마중 레이스



강원일보사는 제17회 시·군 건강 달리기대회 및 제57회 3·1절 단축마라 톤대회를 3월1일 오후 1시 춘천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개최합니다. 광 복 71주년을 맞아 300만 강원인의 힘찬 도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레이스로 펼쳐질 것입니다. 올해 대회는 97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도민 여러분과 마라 톤 마니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제17회 시·군 건강달리기대회
△일 시 : 3월1일 오후 1시
△장 소 : 18개 시·군 동시 개최
△종 목 : 춘천 5km, 10km, 하프마라톤/시지역 10km, 군지역 5km
△접 수 : 강원일보 홈페이지(<http://31marathon.knews.co.kr/>) 또는 18개 시·군 강원일보 지사
※ 시·군지역 코스 및 거리는 3·1마라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57회 3·1절 경축 단축마라톤대회
△일 시 : 3월1일 오후 1시
△장 소 : 춘천시 중앙로 23 강원일보사(앞)
△종 목 : 중등부·고등부·대학·일반부(남·여), (5km, 10km, 하프)
△접 수 : 강원일보 전략기획본부, 강원도육상경기연맹
△문 의 : 강원일보 전략기획본부 (033)258-1250~3

江原日報社

“동서고속철도 내달 사업 추진 이끌어낼 것”

예타 2차 점검회의 26일 확정
道 경제성 확보 총력 대응태세

도 30년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2차 검검 회의가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2월 사업 추진 확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예타점검 보완회의에 이어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도는 1차 경제성(B/C) 분석 값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는 수요 확충 및 비용 절감 방

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었다. 이에 도는 지난달 초 해당 자료를 제출했고 B/C 신출 과정에서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날 B/C 분석 결과가 0.85 이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추가 보완회의 없이 정책분석을 통해 2월 중 사업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대안노선용역에서는 0.97이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현기자 sunny@

2면에 계속

“동서고속철도 내달 사업 추진 이끌어낼 것” - 1면에서 계속

이를 토대로 도는 과거와 달리 B/C 분석 과정에 대한 공개 검증 카드를 꺼내들고 기재부와 KDI를 설득하고 있다.

대안노선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부 등이 기술적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맹성규 경제부지사는 22일 기재부와 KDI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 또 오색로프웨이 건설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미래수요 및 비용절감

방안이 예타 분석에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다.

동서고속철 조기 확정 ‘총력’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 26일 개최 도지휘부 각부처 방문 예타통과 요청

정부의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지난 10월 마지막 회의가 열린 이후 3개월 만이다.

강원도는 20일 기획재정부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사업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

기로 했다.

기재부의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해 9월과 10월 열린 1차 점검회의와 보완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도는 정부와 의견을 보이는 예타 쟁점사항을 공개검증하는 차원에서 2차 회의 조기 개최를 강력 촉구해 온 만큼 이날 주요 쟁점사항이 관철될 경우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KDI 측의 추가 자료요청이 이어지자 의도적 시간끌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원도 의견을 더욱 강력하게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 지휘부는 2차 점검회의를 전후로 기재부와 KDI 등 예타 관련기관을 잇달아 방문, 도와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의견의 예타분석 반영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난데 이어 오는 29일 KDI 등 예타 관련 기관을 재방문해 조속한 예타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맹성규 경제부지사는 오

는 22일 기획재정부와 KDI를 찾아 쟁점사항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합리적인 분석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도 해당 기관들을 방문,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 회장단이 최근 발표한 ‘동서고속철 조기추진 촉구 성명서’를 직접 건네고 들끓는 지역민심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도 21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리는 2016년 의원총회에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건설현장 안전 의무 위반시 처벌 세진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일반재해 발생, 5년 이하 징역

정부가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위험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조치의 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マイ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해 9만4000명의 고졸 취업생을 배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이러한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날 '산안법'에 규정된 감전 또는 방사능 지역 등으로 규정된 20여곳의 '위험장소'를 건설 현장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수준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일반재해 발생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으로 명기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은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원청사 대비 낮은 임금을 받는 하청 근로자와 용역 종사자의 임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종합심사나찰제' 적용 대상을 공사 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의 주요 일정

- ▶ 해수부, 제2차 해양조사 기본계획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
- ▶ 금감원, 서민금융부문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 여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움크숍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사회적책임지수'를 측정·반영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극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동시에 공사 부문뿐 아니라 물품·용역 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려는 조치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를 주제로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정원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와マイ스터고의 학생 수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해 고교 입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올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의 거점(허브)으로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496개의 읍·면·동 주민센터 가운데 700곳에 방문상담과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고,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맡는 방안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지금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형용·김부미기자 je8day@

대한건설협회, 회원부회장 15인 선임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지난해 제1차 이사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했던 회원부회장 선출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 부회장에는 △정수현(현대건설) △박영식(대우건설) △황태현(포스코건설) △김동수(대림산업) △김재식(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선임됐다.

중견·중소기업 부회장으로는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장(삼일기업)

【 2016.1.21(목) 건설경제 】

하도급대금 미지급업체 과징금 더 세게 물린다

증홍종합건설에 7억9200만원 부과 '역대 최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적발된 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한 강력 대처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20일 건설공사와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증홍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증홍건설의 소속회사인 증홍종합건설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금액 중 사상 최대 수준이다.

증홍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7월 말까지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만기 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4175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는 하도급대금 5억9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나 주면서 지연이자 90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증홍종합건설이 조사 직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30억원에 가까운 데다 피해 수급사업자도 100여개를 웃도는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적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삼부토건, 호반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군장종합건설 등 8곳 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 들어서도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광기업에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증홍종합건설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이미 작년 하반기 과징금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적발된 건설사가 3곳, 과징금 4000만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속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님기자 knp@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와 하자보수 책임

Q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지는가?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A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6조), 하자에 대해 연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하자 보수의무를 부담한다. 도급인은 하자 보수청구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청구를 수급인 전체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으며, 구성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이 자신의 시공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그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반면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각자 자기가 분담한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며, 다른 구성원이 분담한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분담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고, 하자 담보책임도 자기 분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지기로 한 당연한 귀결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